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30.(화) 11:00,
(지면) 2024. 5. 1.(수) 조간

배포 2024. 4. 30.(화) 06:00

2024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2024년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5~6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7~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번호 (044-200-5451)
	수산직불제팀	담당자	사무관	박순형 (044-200-6011)

참고 1

수산분야 민생지원 관련 Q&A

1.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 ☐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 중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소규모*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직불금(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어선어업 5톤 미만, 양식업 매출액 1억원 미만, 어업 총소득 1억5천만원 미만 등

- 어선원 직불금은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합니다.

-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어선원직불금의 경우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대리신청도 가능)

- 금액은 작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된 연 130만원을 지급하고 11월까지 어업외 소득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요건	◆ 어선원 직불금 지급요건
☐ (어선어업) 5톤 미만의 어선어업 허가	☐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양식업) 연간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어선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은 제외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어업 총소득 1억5천만원 미만, 어가 내 허가어선 총톤수의 합 5톤미만 등	
☐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 농·임업 기본 직불금 직전연도('23년) 수령 시 제외	

2. 수산정책자금의 지원현황 및 이용방법은?

- ☐ 어업인에게 경영·시설자금을 저금리(1~3%)로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은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7,000억원)하여 4.1조원까지 공급합니다.

* 정책자금 신규공급액 : ('23) 3.4 → ('24) 4.1조원(+0.7조원)

** 시중은행 대출 대비 인당 연간 286만원 이자 절감 효과

- 또한, 개인·법인별 경영자금 융자한도를 5억원씩 상향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개인 : 10 → 15억원 / 법인 : 15 → 20억원

- ☐ 수산정책자금은 가까운 수협은행 지점 또는 수협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어업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계획은?

- ☐ 올해 처음으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에 대해 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지역 수협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개요

- (대상)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해수·내수면 양식어업인 및 수산물 부화·종자생산 어업인(단, 전기요금 체납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간) '24년 12월까지(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내용) 인당 최대 44만원까지 농사용(을) 전기요금 감면
- (절차) 감면 신청(어업인 → 수협조합) → 고지서상 요금 감면(한전)

4. '24년부터 바뀌는 세제 지원 내용은?

□ 종전 3천만원까지 적용되던 양식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어선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최대 33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과세 한도 상향분 2,000만원 * 소득세 세율 16.5%(지방세 포함) = 330만원

□ 아울러,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30만원'으로 설정

□ 어선원 직불제 개요

-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30만원'으로 설정

참고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 제외	■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허가어업	■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신고어업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업 (면허)	■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양식업 (허가)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내수면어업법」	허가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고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전 미리 준비하세요!

5.1.(수) ~ 6.30.(일) 신청접수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 130만원 지급**

신청 전 준비 사항

- ✓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 소요, 3월부터 미리 신청
-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직불금 신청 가능**



어선원 직불금

어선의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 **연 130만원 지급**

신청 전 준비 사항

- ✓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 준비**
 -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23.1.1.~23.12.31.) 동안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근로 제공

